

의안번호	제 910 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발의자	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11월 11일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송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0
----------	-----

발의연월일 : 2021년 11월 11일
발 의 자 : 송미애, 연종석, 윤남진
원갑희, 이상정, 이상식
이상욱

1. 제안이유

-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함 (안 제2조)
- 도지사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도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6조)
-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ESG 경영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9조)

3. 조례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조례안 예고 대상
-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와 협의함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관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도지사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
3. 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확대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ESG 경영 지원)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ESG 경영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ESG 경영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ESG 경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정부, 충청북도 관할 시·군, 충청북도 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존속기한)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2조(적용) 위원회 관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산업발전법

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발전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3.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4.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8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속가능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도내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도내 기업인 대상 ESG 경영 교육 지원 사업의 수행
-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의 수행

3. 관련조문

- **안 제6조(ESG 경영 지원)** 도지사는 충청북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ESG경영위원회 15명, 연 1회 정기회의 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 지급
 - 15명*연1회*130천원 = 1,950천원
-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 추가비용 없음*
 - * 旣시행 충청북도 비즈알리미(카카오톡) 채널 활용
-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충북 소재 기업 중 66개社は ESG 평가 의무화('30), 대상 업체 수 증감 고려하여 연10개 기업씩 ESG 평가 및 컨설팅 지원 예정
 - 협력사 ESG 지원사업 : 5,000천원*연10개기업*협력업체10개 = 500,000천원
 - * 협력사 ESG 교육, 평가 및 컨설팅 지원에 협력업체 30개 기준 15억원 소요(동반성장위원회)
 - ** 응답비율 기준 1개 원사업자는 약 10개 협력업체와 거래(공정거래위원회)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상장사-협력사 ESG 지원 사업	2,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ESG 경영위원회 수당 지급	9,750	1,950	1,950	1,950	1,950	1,950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						
세 출	501,950	501,950	501,950	501,950	501,950	2,509,750
위원회 참석수당	1,950	1,950	1,950	1,950	1,950	9,750
ESG경영 교육 및 평가등급 진단 지원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재원 조달	501,950	501,950	501,950	501,950	501,950	2,509,75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01,950	501,950	501,950	501,950	501,950	2,509,750
지방세	501,950	501,950	501,950	501,950	501,950	2,509,75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